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스포츠클럽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,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 조례 개정 목적 및 용어 정비(조례 안 제1~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조례 안 제3~4조)
- 다. 타기관(학교, 체육회)의 협조 및 지원사항 신설(조례 안 제9조~10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포츠클럽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1. 18. ~ 2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제2항”을 “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제3항”으로, “생활체육의”를 “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”으로, “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”을 “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주사무소가”를 “「스포츠클럽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”로, “있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”을 “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“지정스포츠클럽”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- 4. “학교체육시설”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·운영중인 체육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전의 제3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
2.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
3. 인건비·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·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,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- 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·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, 공공체육시설 사용료

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종전의 제4조)제1항 중 “제3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제3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) ① 법 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,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)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생활체육 진흥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 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 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생활체육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2. “스포츠클럽”이란 <u>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 다)에 있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 <p>3. (생 략)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스포츠클 럽법」 제3조제3항----- ----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 성 및 -----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 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함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>2. “지정스포츠클럽”이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</p> <p>1. ----- 「스포츠클럽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--- ----- 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 을 위하여 운영되는 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(지원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스포츠 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「생활체육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4. “학교체육시설”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·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
2.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
3. 인건비·임차료 등 지정스포츠 클럽의 운영비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1

제4조(지원신청 및 교부)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 (생략)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 (생략)

<신설>

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·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,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신청 및 교부) ① 제4조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 
----- 제4조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

제9조(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)  
① 법 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,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

<신 설>

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)  
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 
따라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  
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 
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4조(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
2.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
3. 인건비·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최영민
연 락 처	02-3153-9864